

# 소화설비와 보험료

김 동 일 <점검 2부대리>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를 쉽게 짐작할 수 있을 때 “불을보듯 뻔한 일”이라 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찌할 도리없이 방관하게 되는 경우를 “강건너 불구경”이라고 한다.

1971년 12월 서울 충무로에 있는 대연각호텔의 화재는 163명의 사망자를 낸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화재 참사였고 그 이듬해 같은달에 일어난 서울 시민회관의 화재 또한 사망53명, 부상76명의 엄청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온 대참사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화재예방활동이 미진한 우리나라 형편으로서는 대형의 화재사고발생이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으며, 정부에서는 더 이상의 불구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통칭 화재보험법)을 제정, 1973년 2월 6일 법률 제2482호로 공포하였다.

화보험은 동법 제1조에 “이 법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계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하여 제정목적은 분명하게 하였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한국화재보험협회」(“화협”이라 약칭)를 설립하게 하였던 것이다.

## 특수건물과 보험

화보험의 제정목적이 화재의 예방과 이체에 대한 보상이라면 동법의 대상은 특수건물이다. 특수건물이라함은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및 전주 등 7대도시에 소재하는 건물로서

- 구조를 기준으로한 특수건물 : 4 층이상의 건물
- 소유자와 면적을 기준으로한 특수건물 : 국유건물
- 용도와 면적을 기준으로한 특수건물 : 사설강습소, 옥내판매장, 유흥음식점, 공동주택, 공장

● 순수한 용도를 기준으로한 특수건물 : 병원, 호텔, 공연장, 촬영소, 시장, 학교

등의 건물을 말하며, 이는 한결같이 다수인이 출입하거나 근무하는등 화재가 발생 할 경우 인명과 재산의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물 들이다.

특수건물은 화협에서 실시하는 매년 1 회 이상의 안전점검을 통하여 화재에 대한 취약점을 진단받아 이를 보완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는 한편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에 대한 사후보상을 보장받게 하였다.

## 보험료의 구성

F.O.C<sup>1)</sup> 등 영문약관을 사용하는 극히 일부를 제외한 특수건물의 대부분에 화재보험 보통약관(국문)이 통용되고 있으며 이 약관에 따라 체결하는 화재보험계약은 재무부로부터 인가된 협정요율을 따르게 된다.

위 요율은 건물의 용도에 따라

- 주택물건
- 일반물건
- 창고물건
- 공장물건

등 4 가지 물건으로 구분하고, 각 물건별로

- 기본요율
- 할증요율
- 할인요율

등을 가감하여 적용요율을 계산하게 된다. 즉, 적용요율 = 기본요율 + (할증요율 - 할인요율)이 된다.

다음 표는 물건별 적용요율의 산출요소를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다. (표1)

(표1) 물건별 적용요율의 산출요소

요율 물건	기본요율	할증요율	할인요율
주 택	소재지, 건물구조	건물상태	위치, 설비, 금액
일 반	소재지, 건물구조	상태, 용도, 작업, 위험품	위치, 설비, 소유, 금액
창 고	소재지, 구조, 위험품	건물상태	설비, 금액
공 장	건물구조, 작업공정	건물상태	설비, 금액

이해를 돕기위하여 일반물건의 경우를 예로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본요율은 물건의 소재지에 따라 화재시 연소확대의 위험, 소화활동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국을 4 개등지로 구분하였고, 건물의 구조를 그 내화도 등에 따라 4개급으로 분

\* 1) F.O.C.(foreign) Policy Form : 영국의 F.O.C.(Fire Office Committee)에서 외국보험자를 위하여 제정한 통일약관

류하였다.

할증요율은 건물의 지붕, 층수 등의 상태에따른 특성을 감안하여 지붕할증, 고층할증 등으로 세분하고, 그 용도에 따라 47종의 직업할증으로 구분 적용할 수 있으며, 건물내에 작업장이있는 경우 28등급 범위내의 작업할증이 부가된다. 할증요율을 위와 같이 분류하는데에는 화재의 발생위험, 화재의 하중, 소화활동의 난이도 등이 고려된 점은 말할나위가 없다.

#### 할인요율에는

- ① 건물의 주위에 소정의 공지가 확보되어 있을 때 적용되는 공지할인.
- ② 「소화설비규정」에 따른 소화설비가 있는 경우의 소화설비할인.
- ③ 화보법에 의거 가입하는 물건에 대한 특수건물할인.
- ④ 보험금액20억원을 초과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고액보험계약할인.
- ⑤ 기타 방화문할인, 특수건물에 적용하는 주방 및 화장할인, 방화구획할인, 피난설비할인 등이 있다.

#### 보험료를 적게 내려면

동일부보금액에 대한 위험의 담보조건으로 지급하게 되는 보험료는 그 액수가 적을수록 보험계약자에게 경제적이다. <표1>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기본요율의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하여서는 적용상의 변수가 거의 없는반면 할증요율과 할인요율에는 관계자의 관심도에 따라 가감이 가능한 부분이 많다.

각양각색의 건물이 저마다의 특성을 갖고 있어 일률적인 설명이 어려운바 있으나, 화협에서 매년 실시하는 안전점검시 또는 보험의 계약 갱신시는 물론, 건물의 보수 용도의 변경등 변동이 있을때에 사례별 자문을 받음으로써, 보험료의 경감이 가능 할 것이다.

#### 소화설비규정

건물의 면적·층수·용도에따라 소방법에 의한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은 두루 아는 사실이다.

1967년 12월에 한국손해보험요율산정회에서 제정한 뒤 추가제정, 개정 등을 거쳐 현재 사용중인 「소화설비규정」은 소방법에서 규정한 소방설비를 보험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으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소화설비규정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의 검사에 합격한 소화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 및 그 수용동산에 대하여 소화설비할인을 한다”는 규정을 통하여 건물

주로 하여금 좀더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방재활동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본 소화설비규정은 특수건물 이외의 건물에도 같이 적용된다. 다만 특수건물의 경우는 화협의 안전점검시에 할인 검사를 병행하게 되지만, 그밖의 건물은 필요시 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참고로 소화설비와 기타할인율을(표2)에 소개한다.  
<표2> 할인율표

구분	종 류	할인율
소화설비할인	옥 내 소 화 전	기본요율의 5~10%
	옥 외 소 화 전	" 10~15%
	자동 화재 경보기	" 5~8%
	자동 화재 속보기	" 5%
	가반식동력소방펌프	" 8~15%
	스 프 링 클 러	" 20~60%
	포 소 화 설 비	" 5~15%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5~20%
공 지 할 인	기본요율의 10~20% (공장제외)	
방 화 구 획 할 인	" 5% ( " )	
피 난 설 비 할 인	신체배상 특약보험료의 30% ( " )	
주 방 및 화 상 할 인	기본요율의 10% ( " )	
특 수 건 물 할 인	업종에 따라 적용요율의 10~30% ( " )	
고 액 계 약 할 인	최종 보험료의 2~12% ( " )	

\* Halon 13이 소화설비에 관한 규정은 현재 제정 중에 있다

#### 소방법규와 다른점

소화설비규정과 소방법규는 근본적으로 상호 동질의 내용이지만, 설비기준과 유지관리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① 초기소화설비-소화설비 할인의 전제조건으로 소방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화재에 적용할 수 있는 소화기를 비치할 것. (소방법 기준중 완화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② 옥내소화전설비

● 1차수원 : 층별 소화전 설치수에 따라 6~15m<sup>3</sup> 이상일 것.

● 2차수원 : 소화전의 배관에 항상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고가탱크 또는 압력탱크로써 1차수원의 50%용량 이상일 것.

● 방수압 : 1.7~2.5kg/cm<sup>2</sup> 이상으로서 7kg/cm<sup>2</sup> 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예비호스 : 소화전 총 설치수의 20%이상(최소 2 개 이상)비치할 것.

● 비상통보 : 경비실, 펌프실 및 그밖의 관계인에게 즉시 통보할 수 있도록 각 층에 화재 경보기 전화 및 벨등을 설치할 것.

● 유지관리 : 매월 1 회이상 점검하고 유지관리대장에 기록할 것.

● 소화훈련 : 소화전 조작에 능숙한 2인 이상의 인원을 둘 것.

● 보온설비 : 소화배관은 동결방지를 위한 보온조치를 할 것.

● 전동기에 송전하는 전선로는 전기실로부터 전용회로로 설치할 것.

### ③ 자동화재경보기(자동화재탐지설비)

● 수신기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수신기 조작부의 각 스위치는 정상스위치에 둘 것.

● 수신기 근처에는 다음의 것을 비치할 것. (경계구역일람표, 설비배치도, 수신기회로도 및 취급설명서, 보수점검 기록표, 램프 및 휴즈 예비품)

● 설비의 기능을 숙지하고 충분한 기능을 가진자에 의해 정기적으로 시험점검 및 정비를 행하고 화재시 즉시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시 유효한 상태를 유지할 것.

● 보수점검기록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유지관리에 참고할 것.

● 감지기배선은 직경1.0mm이상의 절연전선 또는 0.5mm 이상 케이블을 사용할 것.

④ 기타설비 : 소화설비규정을 참조할 것(요약 팜프렐 제작 예정임).

즉, 소화설비규정은

① 설비면에서는 충분한 소화수(소화약제)와 예비품의 확보, 전선로의 보완 등으로 보다 원활하고 지속적인 경보 및 소화활동의 조건을 요구하고

② 관리면에서는 설비의 보수·점검등을 통하여 상시 유효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명문화한 점이 소방법규와의 미소한 차이일 뿐이다.

선진 외국에서 소화설비규정과 같은 민간단체의 기준 등을 법 또는 조례 등으로 인용하는 예로 미루어 위 규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방법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옥내소화전설비규정중 방수압의 상한치(7kg/cm<sup>2</sup>) 설정, 배관의 보온설비 등은 법제화단계에 이르고 있다.

한편 소화설비가 규정에 미달되는 경우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문이 많으나, 위의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 외에 안전점검 결과나 보험계약에 불이익을 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 소방설비 할인실적

소화설비규정에 따라 83년중(화협FY.83) 할인율을 적용 받은 건물은 특수건물 501건, 비특수건물 30건등 모두 531건으로 집계 되었다.

설비별로는 특수건물의 경우 자동화재경보기 403건, 옥내 소화전 182건, 기타설비 31건등 모두 616건으로서, 80년도의 14건, 81년도의 41건, 82년도의 347건에 비하여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그 점유비율이 급격히 높아 지고 있는 실태로서, 이는 소방시설의 설계와 시공 측면에서 상당한 발전이 있었음은 물론 안전점검을 통한 꾸준한계몽과 특히 건물 소유자의 방화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 또는 관심의 증대로 평가 된다.

화재시 신속한 경보와 적절한 소화활동을 할 수 있고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더블플러스(Double plus) 효과외에 보다 진보된 방재설비를 갖춘 건물이라는 무형의 자부심이 포함되는 소화설비규정에 관심이 증대됨은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라 하겠다.

다만, 일본의 경우처럼 할인규정에 일부 미흡한 설비에 대하여 적용하는 부분할인제도의 확대실시라든가 할인율을 최종보험요율에 적용함으로써 보험계약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일부규정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히 요구된다.

## 아니면 굴뚝에 연기

고대희랍의 프로메테우스(Prometheus)가 신에게서 훔쳐 인간에게 전하였다고 알려진 불은 짐승과 물고기를 굽고 짓은 옷을 말리던 고대에서부터 이용되기 시작하여 과학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에 이르기까지 단 하루도 인간의 걸을 떠난 일이 없었을 것이다.

불은 그 이용과 재해라는 두가지 상반된 원인으로, 불의 효율적관리 즉, 연소와 소화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공존하여왔으나 불의 형태는 과학기술의 진보와 더불어 훨씬 다양해지고 소화는 늘 그 뒤를 따라가는 형편이다.

건물과 산업의 대형화에 따라 불에 의한 피해도 점차 대형화하는 추세는 이미 아는 바로서, 수준높은 방재대책이 잘 마련된 선진 제국의 화재로 인한 피해액이 후진국에 비하여 훨씬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우리도 눈여겨 보아야 할 결과인 것이다.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 불이 있고 불이 있는 곳에 화재가 도사리고 있다.

화재는 그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적절한 소화활동은 차선의 길이다.

수백명이 함께사는 아파트에도, 뻗어나는 국력처럼 솟아오르는 빌딩에도,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서도 굴뚝의 연기는 멈추지 않는다.

불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다.